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-130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고객 맞춤형 소포 시험적 실시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-70호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6일

우정사업본부장

‘고객맞춤형 소포’ 시험적 실시

1. 개요

등기 취급을 전제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체국 방문 수령, 내용품 사진 제공, 거점 활용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

※ 세부 서비스 명칭, 서비스 개요, 이용가격, 서비스 수준(중량, 크기 등) 및 취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적 실시

※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예외 적용

2. 주요내용

가. 「소포물품 사진서비스」(이하 “사진서비스”라 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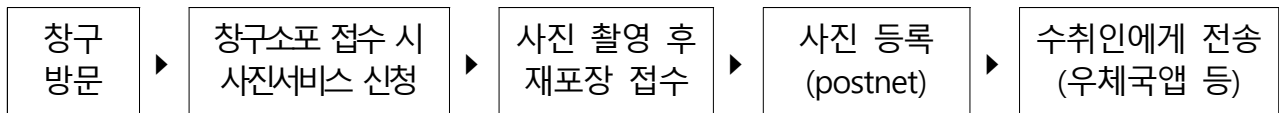
1) (대상 우편물) 창구접수 등기소포 우편물

2) (서비스 개요)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등기소포 우편물의 내용품을 우체국이 촬영하여 수취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

- 제품의 성능(고장 및 진품 여부 등), 품질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, 단순히 사진 촬영을 통해 해당 물품 외형만을 수취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임

* 우체국에서는 제품의 성능, 진위 여부, 품질, 거래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한 보장 및 책임을 지지 않음

< 사진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>



3) (부가 이용 수수료) 500원(소포 1통당 1매 전송)

- * 고객 납부 요금은 중량·크기에 따른 소포 요금 및 부가 이용 수수료를 합산
- * 2025년 1월 10일부터 수수료 인하(중전 수수료는 1,000원)

4) (사진 전송) 결제 완료 시 수령인에게 메시지(URL) 전송*

- * 메시지 전송 순서 : 포스트톡 → 카카오톡 → 네이버톡톡 → SMS 문자

5) (사진 매수)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사진 1매

- * 카메라 사양 : 400만 화소 이상

6) (재포장 접수) 사진 촬영과 결제 완료 후 직원이 보는 창구 접수대에
서 고객이 직접 재포장한 후 직원이 접수

7) (접수취소·반환) 기존 창구소포 취소·반환 프로세스와 동일

- * 사진서비스만 단독으로 취소 등 불가

8) (서비스 관서) 수도권 및 경남·충청지역 시·군·구 대표우체국 134국

- * 지방청별 현황 : 서울청 22국, 경인청 43국, 부산청 37국, 충청청 32국
- * 사진서비스 시범 관서 명칭, 주소, 전화번호는 별도 첨부

9) (시행 기간) 2024. 5. 24.(수) ~ 별도 공고 시까지

나. 「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포 접수거점 확대 서비스」

1) (대상 우편물) 등기소포 우편물(접수거점 보관 후 수집)

2) (서비스 개요) 발송인이 접수거점*의 우체통 또는 보관함에 등기소포
우편물을 투함 또는 보관하면, 우체국에서 해당 등기소포 우편물을
수집(픽업)하여 접수·발송해 주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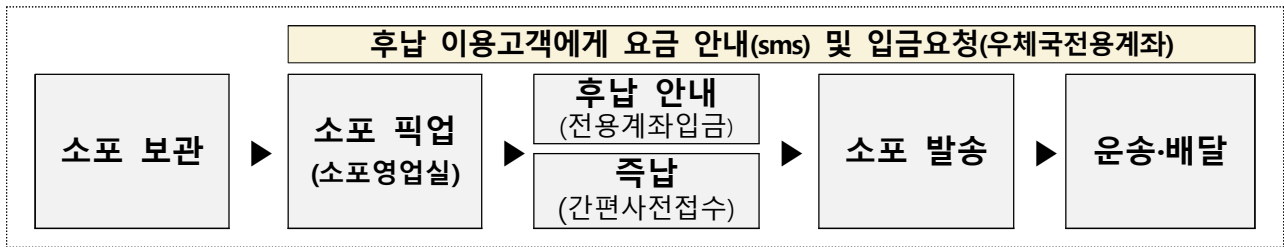
- * 아파트 단지(관리사무소, 기타 커뮤니티 공간), 근린상가(업체), 대학교(기숙사)
등에 우체통 또는 보관함 설치 공간을 제공 및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

3) (소포 요금) 창구접수 등기소포 요금과 동일

4) (제휴 수수료) 소포 개당 500원 이하*

- * 최대 수수료 범위 내에서 접수거점(관리사무소, 기타 커뮤니티 공간 등에 따라
수수료 상이)과 우체국이 협의하여 결정(계약 체결)

< 접수거점(보관함)을 통한 접수 프로세스 >



- 5) (접수거점 제휴 가능 관서) 전국 시·군·구 대표우체국 223국
 - * 지방청별 현황 : 서울청 22국, 경인청 43국, 부산청 37국, 충청청 32국, 전남청 25국, 경북청 30국, 전북청 15국, 강원청 17국, 제주청 2국 (별도 첨부)
 - * 제휴 추진 중인 시범 관서 명칭, 주소, 전화번호는 별도 첨부
- 6) (접수거점 제휴 방법) 우체국과 접수거점이 우체통 또는 우편함 설치, 수집 시각, 제휴 수수료 등을 협의하여 계약 체결
 - 계약의 주체는 우체국이지만, 제휴 추진 여부나 계약 내용 결정 등은 우체국 상급기관(우본, 지방청)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협의 진행
- 7) (발송인 이용 방법) 발송인이 접수거점의 우체통 또는 보관함에 소포 우편물을 투함하고 발송 신청
 - 인터넷우체국(우체국앱) 간편사전접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공한 결제정보로 우체국에서 접수 시 자동으로 결제 처리(선불)
 - 간편사전접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는 선접수·발송하고, 발송인은 SMS로 안내되는 우체국 전용계좌로 소포 요금을 입금하여 결제 처리(후불)
- 8) (우체국 처리 방법) 계약이 체결된 우체국에서는 접수거점의 우체통 또는 보관함에 투함 또는 보관된 우편물을 수집하여 창구접수 등기 소포우편물의 예에 의하여 처리
- 9) (시행 기간) 2025. 7. 1.(화) ~ 별도 공고 시까지

다. 「우체통 투함이 가능한 ‘0호 상자’ 이용 시 소포요금 할인 서비스」

- 1) (대상 우편물) 등기소포 우편물(우체통 투함, 우체국 창구접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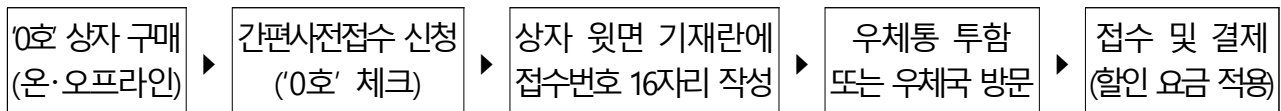
2) (서비스 개요) ‘0호 상자’ 이용 고객의 소포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

3) (소포 요금) 중량 제한 없이 **3,500원**(단, 크기는 41cm 규격 상자이며, 간편사전접수 신청 필수)

* 부가 이용 수수료 및 상자 요금은 별도, 물량 감액은 적용 불가, 제주 익일배달 (제주→육지)은 2,500원 추가요금 발생

* 간편사전접수 신청 없이 우체국에서 접수 시 창구접수 등기소포 요금으로 접수

< 할인 요금 접수 프로세스 >



4) (서비스 관서) 전국 우체국

5) (취급 방법) 우체통에 투함된 ‘0호 상자’는 수집우편물 및 창구접수 등기소포우편물의 예에 의하여 처리

6) (이용 방법)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‘0호 상자’를 이용하여 소포 포장 및 인터넷우체국 간편사전접수 신청 후 우체통에 투함하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소포를 접수하는 경우 할인된 소포 요금을 적용

- (필수사항) ‘0호 상자’ 이용 및 간편사전접수 신청 필수, 간편사전접수 시 결제카드 정보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필수

- (제한사항) 우체통 투함 시 접수번호 1건당 1통까지 신청 가능(2통 이상은 신규 접수번호로 신청), 우체통 투함 시 안심소포 이용불가

- (유의사항) 접수번호 오기재·미기재 시 우편법령에 따라 임의 개봉 및 보관 후 처분 가능, 요금 결제 불가 시 일반소포 반환 처리 등

*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주소·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라 임의 개봉 및 1개월간 보관 후 폐기·매각 등 처분 가능

* 카드 오류 등으로 요금 결제 불가 시에는 발송인에게 일반소포로 반환 처리

7) (요금할인 기간) 2025. 7. 21.(월) ~ 2026. 12. 31.(목) * 요금 결제일 기준

라. 기타 서비스

- 향후 신규서비스 추가 시행 시 이 광고문을 개정하여 재공고 예정

부 칙

1. 이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「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-70호」는 폐지한다.